

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(제38조제3항 관련)
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	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	수탁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	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측정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	국립환경과학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「전파법」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	국립전파연구원

비고: 수임기관에 위임되는 권한은 위 표의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제38조제3항의 권한에 한정한다.